

〈主 題〉

컴퓨터프로그램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임 정 재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이사장)

□차 례□

- | | |
|-------------------------------|-----------------------------|
| I. 머릿말 | V. 컴퓨터프로그램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
| II.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의 중요성 | VI.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제도 운영성과 |
| III. 저작권제도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의 특징 | VII.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제도의 국내외 환경변화 |
| IV. 컴퓨터프로그램보호제도 주요 내용 | VIII. 맷음말 |

I. 머릿말

우리나라가 지난 1987년 7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시행한지 9년여의 세월이 지났고, 어느덧 프로그램 등록실적도 30,000건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컴퓨터가 우리사회에 도입된 이래 그 응용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정보화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한지가 오래되었고, 지금은 사회 모든분야에 걸쳐서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이와같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그 이용의 폭이 확대되어 온데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에도 힘입은바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컴퓨터의 이용 분야를 개척하고 그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켜주는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이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발전은 각 기업 또는 개인이 이룩한 기술상의 성과를 법률로서 보호해주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제도의 현황과 운용성과를 살펴보고 프로그램 저작권의 주요권리 및 침해문제 그리고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보호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의 중요성

컴퓨터 소프트웨어라함은 광의로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술을 충칭하는 말이지만 협의로는 보통 컴퓨터프로그램 만을 뜻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된 언어에 따라서 분류하면 크게 두 종류, 즉 인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고급언어(high level language)로 작성된 소스프로그램(source code)과 컴퓨터가 읽고 판독할 수 있는 기계어(machine readable language)로 작성된 오브젝트프로그램(object code)으로 나눌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는 이와같은 소스 및 오브젝트 프로그램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법적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입법취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은 일종의 지적재산물이고 경제재로서 독립적 거래대상(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창작에 많은 비용과 노력 및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그 특성상 복제는 녹음테이프 복사보다도 더 용이하고 복제된 프로그램도 원본과 조금도 다름 없는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개발에 투입된 자금(개발비)의 환수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와같은 개발자인 선행투자자의 권리보호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만약 고액을 투자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법률상 일정한 범위의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선행투자자는 무

단복제당할 위험과 염려 때문에 이를 비밀에 부치고자 할 것이고 이러한 비공개는 국민으로부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엄가로 구입·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며 필요한 자는 다시 고가를 들여 독자개발을 하는 등 중복투자로 인한 국민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커지게 된다.

셋째, 프로그램보호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촉진시킨다. 프로그램의 효율적 개발을 유도하고 무단복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법적장치를 운영함으로써 중복투자방지와 유통촉진을 가져와 프로그램의 개발, 유통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형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적으로 대외인식 개선과 협력증진을 가져온다.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프로그램도 보호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불법복제국이라는 불필요한 나쁜 인식을 씻을 수 있으며 외국 프로그램의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신규개발 촉진 및 기술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저작권제도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의 특징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별도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문화창달적 측면보다는 첨단기술과 관련되는 경제재인바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기술발전의 차원에서 보호·육성하여야 할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고, 저작권법에 규정하기 어려운 유통촉진, 기술이전, 품질보증등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개념을 포괄하는 장치를 마련코자 함에 있었다. 당초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처가 동법을 제정·시행하였으나 19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재는 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 정보통신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으로 대변되는 산업체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은 후자인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에 의한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보호대상이 저작물 표현(expression) 그 자체이고 저작물에 내재된 어떠한 개념이나 사상 혹은 아

이디어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보호에 원칙적으로 등록이나 심사등과 같은 어떠한 조건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는 보호권리는 절대적 독점권이 아니고 상대적 독점권으로서 즉, 서로 동일한 두 저작물이 서로 다른 저작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면 모두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은 문예·학술저작물의 보호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보호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설계도면등 기술적 창작물의 보호도 포함하게 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출현한 이래 많은 학자들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구미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관례로서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여 왔었다. 그러다가 1980년에 이르러 미국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인정함을 성문화하자 세계 각국은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다.

저작권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는 작성된 언어의 종류, 프로그램의 기능 및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은 모두 인간이 판독할 수 있는 소스프로그램 형태로 작성되어 이를 오브젝트프로그램으로 자동 변환할 수 있고 또한 그 반대로의 변환도 가능하며, 그리고 어떤 형태의 매체에도 표현 혹은 기록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그 작성된 언어, 기록된 매체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그 자체의 표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작성 혹은 창작한 저작물의 표현(expression)이므로 프로그램의 보호는 프로그램 그 자체(표현)에 국한된다. 저작권보호의 특징은 보호에 있어 아무런 절차나 조건이 필요없기 때문에 보호가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보호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잇점이 있으나, 반면에 표현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기술적인 것이고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법의 절차에 따라 아이디어를 특허로서 보호할 수 있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권리와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서로 독립적인 것 이므로 독자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특허법의 비교

구 分	프로그램보호법	특 허 법
1. 목적	산업발전과 기술진흥	기술의 진보, 발전도모
2. 권리의 성격	저작권(제한적·배타적 권리) 저작권(인격권, 재산권)	특허권(절대적·배타적 권리) 특허권(재산권)
3. 권리발생요건 및 보호기간	무방식(창작과 동시에 권리발생) 50년간 이상 보호	등록(등록에 의하여만 권리발생) 20년간 보호
4. 등록의 효과	- 창작일 추정효과 - 침해자 과실추정 효과 - 권리이전·처분에 관한 3자 대항력 ※ 권리의 발생과 관계 없음	권리 설정 및 행사에 필수적임
5. 분쟁의 해결	조정, 소송(법원)	심판소, 항고심판소

자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축조연구」, 송상현 등, 1989. 4

IV. 컴퓨터프로그램보호제도 주요 내용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지난 94년 1월 벌칙에 대한 현실성 확보와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 법제정·사행 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WTO/TRIPs의 발효에 따라 보호기간 및 소급보호 문제 등 우리나라 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일부 정비·개정하였다.

그간의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호의 대상

보호의 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과정 또는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4조). 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전술한 바와 같이 source program이나 object program의 구분없이 모두 보호대상이 되나 flow chart등은 컴퓨터에 대한 지시나 명령형태가 아니므로 보호대상에 제외된다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한 프로그램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프로그램으로 하고 외국인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인 세계저작권협약(UCC, 1987. 7 가입)과 베른협약(1996년 하반기중 가입 예정)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의 프로그램에 한하여 상호 보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3조).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계속 개작을 해나가야 할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개작 프로그램은 2차적프로그램이라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물론 이러한 개작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또는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개작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에게만 한정된다.

2.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일반 저작권의 경우와 같이 무방식주의를택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당초에는 창작된 때로부터 50년간으로 하였으나, WTO/TRIPs 규정에 맞

추어 지난해 12월 법개정을 통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법 제8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권자인 법인등이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소멸된다(법 제20조).

프로그램은 그 기능을 중시하는 기술적인 작품으로서 많은 경우가 법인의 기획된 업무의 일부로서 종사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제작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 저작자는 당해 법인이 된다(법 제7조)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내용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및 발행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다만 가정용이나 교육목적상 필요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하는 것은 일부 범위안에서 저작권자의 하락없이도 가능하다(법 제8조, 제22조).

프로그램저작자는 또한 프로그램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프로그램의 동일성유지권을 갖게되는데 다만 프로그램의 성질 및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한편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법 제16조의2)

4. 프로그램 등록제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어 프로그램저작권 발생을 위하여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프로그램의 특수성에 비추어 프로그램 등록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저작자는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저작자의 국적, 실명 및 소재, 프로그램의 개요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복제물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1조, 제22조). 주지하시다시피 프로그램 등록업무는 그간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95년 1월 1일 부터는 재단법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서 수행중에 있다.

프로그램의 등록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권리발생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아니고 또한 소송제기의 전제요건도 아니나 등록을 하게되면 등록된 창작년월일에 창작되었다는 점과 후일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어 프로그램을 등록한 자는 침해소송에 있어서 커다란 입

증상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잇점이 있다(법 제22조, 제27조). 한편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제도를 별로로 운영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과 권리설정등 권리변동을 공시할 수 있도록하여 거래안전을 위한 법적장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4조).

5.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시 구제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공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또는 발행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는 친고죄이어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36조).

한편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25조) 또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27조)

상기와 같은 민·형사상의 소송외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다음의에 두가지 증거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첫째는 침해자의 침해사실에 대한 자백이 있다던가 혹은 침해사실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서 이를 채택하는 경우인데 가장 확실한 증거이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침해행위가 은밀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침해혐의자에게 침해혐의자의 프로그램과 자신의 프로그램과의 동일성 혹은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음과 침해행위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채택하는 경우인데 저작권자가 이러한 증거를 제시할 때 만일 침해혐의자가 그러한 증거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V. 컴퓨터프로그램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및 저작권 보호의 강화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원에서의 기존의 소송절차가 프로그램과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저작물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고, 소송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제수단도 분쟁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94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의 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제도 발전을 위하여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의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동 위원회는 지난해 4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조정신청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서는 프로그램 분쟁의 특징을 살펴보고 소송과 비교하여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조정제도의 의의를 말하고자 한다.

1. 컴퓨터프로그램 분쟁의 특징

컴퓨터프로그램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보호법이 기존의 저작권법 원리를 원용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전통적인 저작물과는 성격이 상이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범위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가 불분명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을 생각하면 법규법의 충실향 해석 및 적용을 주된 일부로 하는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분쟁의 두번째 특징은 고도의 기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프로그램 분쟁은 저작권에 관한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술전문가의 도움이나 참여가 요구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법원은 전통적인 저작물에 있어서 '통상인이 보기에 문제될 저작물이 서로 상당히 유사한가' 여부를 기준

(ordinary observer test)으로 하여 왔으나 프로그램 분쟁에 있어서는 그 특성상 그러한 기준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의미하다 할 수 있다.

2. 컴퓨터프로그램 분쟁조정제도의 장·단점 및 의의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 분쟁상대방의 합의와 무관하게 강제적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막대한 소송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소송전 및 소송절차 진행중 엄격한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철저한 증거수집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ADR로서의 조정은 프로그램보호법, 절차법, 컴퓨터공학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조정을 담당하여 당사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가.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하여 프로그램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컴퓨터산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 수명(life cycle)이 아주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쟁해결 방법은 분쟁대상이 되고있는 프로그램이 시장성을 잃거나 최소한 또다시 등장하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 본안 소송이 전의 침해금지 차치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저작물에 있어서는 차치분신청에서 변론까지 수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차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경우 6개월 정도의 조사와 준비를 거친후에 변론이 열리게 되어 차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기간동안 저작권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또다른 문제점의 하나는 소송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이다. 미국에서의 경우 프로그램 소송시 수십만달러에서 수백만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소송에 있어서 이와같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

는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미국의 경우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분쟁사실 관계를 정확히 전달·설명하기 위하여, 분쟁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의 기능 뿐만 아니라 그 source code와 object code 그리고 심지어는 기초적인 programming technique과 프로그램 작성순서 및 방법을 설명해야 하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분쟁당사자들이 감정증인을 동원하여 기술적인 요소에 관하여 판사등에게 설명해야하는 등 그에대한 비용이 막대한 규모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감정증인의 활용등 기술적요소를 설명·입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뿐 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관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기회비용도 분쟁당사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술적인 지식

소송에 의한 프로그램분쟁의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분쟁내용을 파악하고 심리힘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재판과정에 있어서 판사의 기술적 판단을 보조하기 위해 소위 전문감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판사가 감정인의 의견에 좌우될 위험도 있으며, 소송당사자들이 전문감정인을 각각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감정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또한 이에따른 비용(감정료)과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에는 조정위원에 프로그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고, 조정에서의 입장에 관한 절차가 소송과는 달리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서럽하고 신속하게 기술적 문제에 관한 판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분쟁대상이 된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행 프로그램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면 기존 분쟁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승리하는 제로섬게임에 불과하거나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하는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여러여건을 살펴보건데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조정에 의한 해결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VI.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제도 운영성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이후 9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은 프로그램 불법복제 개선등 프로그램 저작권보호가 크게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민간기업단체의 자율적인 정품사용 운동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그간의 불법복제 폐해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의욕 저하 및 투자환경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구조적인 취약성을 면치 못했던 국내의 소프트웨어 시장도 외형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등 산업발전의 기반을 크게 다졌으며 이에따라 자생적 경쟁력이 향상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의 주도 하에 S/W 가격인하, 전국적인 유통망의 구축, S/W 기능향상(Up-Grade) 및 신개발품의 지속적인 발표등 소비자들의 S/W 이용환경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 개발자의 자기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 등록건수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지난 '87년 7월1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이후, 같은해 9월 1일부터 시작된 프로그램 등록은 등록개시후 63개월만인 '92년 11월 1만건을 돌파하고, 그후 94년 12월 25개월만에 2만건 돌파, '96년 4월 26일 1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3만건을 돌파 하였으며, 월평균 등록건수 또한 '87년 39건, '91년 220건, '95년 546건으로 매년 급격한 등록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등록이 급증하는 이유는 등록이 저작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기도 하지만 등록을 통해 무형의 지적재산인 프로그램을 실체화할 수 있고 또한 개발실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큰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의 프로그램 불법복제·사용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학원·컴퓨터상가·기업등 일부 수요자 계층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프트웨어 수요잠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복제 현상은 프로그램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인식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사용자의 정품사용 인식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사용자에게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일반적인 불법복제의 형태는 사용자에 의한 단순복사(softlifting)를 들 수 있다. 이는 회사등에서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불법복제하는 것을 말

하며 친구나 동료들간에 디스켓을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

등록기간별 프로그램 등록현황

(단위 : 건, %)

기 간	등록건수	구 성 비	월평균 등록건수	전년비 증감율
1987. 9. ~ 12	154	0.5	38.5	-
1988년	833	2.8	69.4	80.3
1989년	1,454	4.8	121.2	74.6
1990년	2,166	7.2	180.5	49.0
1991년	2,634	8.8	219.5	21.6
1992년	3,532	1.8	294.3	34.1
1993년	5,080	16.9	423.3	43.8
1994년	5,934	19.8	494.5	16.8
1995년	6,553	21.8	546.1	10.4
1996. 1.1 ~ 4.26	1,660	5.5	415.0	97.6
합 계	30,000	100.0	288.5	-

프로그램종류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프로그램 종류	응용프로그램						시스템프로그램							합계
	사무 관리	과학 기술	교육	오락 (게임)	기타	소계	셰어 (OS)	언어 처리	유필리티	데이터 통신	DBMS	기타	소계	
등록건수	6,382	8,937	550	730	1,360	17,959	2,477	321	3,210	3,782	1,007	1,244	12,041	30,000
구성비	21.3	29.8	1.8	2.4	4.5	59.9	8.3	1.0	10.7	12.6	3.4	4.1	40.1	100.0

서작자 유형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저작자 유형	민간기업	국 공립 연구소	정부투자 기관	정부공익 기관	각 학교	민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등록건수	20,363	5,600	776	179	29	77	2,794	182	30,000
구성비	67.9	18.7	2.6	0.6	0.1	0.3	9.3	0.6	100.0

다음은 프로그램 임대형식(rental)을 통한 불법복제로서 일반 소매상 또는 우편판매 등을 통하여 마치 비디오테이프를 빌리는 것과 같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개발자에게는 정품의 판매기회 상실이라는 피해를 주고 있다.

다음은 프로그램 위조(counterfeit)로서 정품과 똑같이 복제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속아서 구입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매뉴얼은 물론 포장에서부터 등록카드, 레이블까지 거의 완벽한 위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PC판매상들이 PC내에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탑재시켜 주는 경우(hard disk loading)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정품디스크 및 제품 설명서 또는 사용자협정서등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

끝으로 사설전자계시판을 이용하여 상업용 프로그램을 불법복제·유통(bulletin board piracy)하는 것도

정부는 SW산업 육성 및 대외 통상마찰 완화의 차원에서 1993년 2월부터 합동단속반을 구성,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자율적인 정품사용 운동이 각 계각층에 확산되고 있는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VII.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제도의 국내외 환경 변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물질우위구조로부터 지식우위구조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지구상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혁명으로 인하여 '정보 내지지식' 우위의 사회구조에로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

불법복제의 일반적인 유형

구 분	상 업 적 유 형	비 상 업 적 유 형
불법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마켓등 보조수단으로 복제(일명 끼워주기) - 소프트웨어 판매회사의 복제 -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의한 복제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대 개인을 통한 복제 (개인적 안면) - 그룹 등을 통한 복제 (학원, 동호인등)
불법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의 질저하를 위한 에러 삽입 배포 - 점조작을 통한 저가·대량배포 - 전문상가를 통한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배포 - 단체를 통한 배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구 分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입건자 수 (구속+불구속)	83	629명	308명	243명

자료 : 대검찰청

최근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주로 게임용 프로그램들이 이 방법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은 조세·금융등 제도적 지원책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불법복제의 성행으로 다각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의 자생적 경영력 제고에 있어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대검찰청등

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보호의 중요성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

1. 컴퓨터프로그램의 국제환경 변화

지금 세계 각국들은 국가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개발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해외 이전을 기피하여 이를 통상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Techno Round'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진다든지 1995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된 WTO/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가 실현되는 한편, 자유무역 규범의 위반여부를 감시하는 강력한 국제기구가 탄생하였다는데 있어서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WTO체제는 모든분야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높이 들면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반대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WTO/TRIPs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법에 대하여 source code 또는 object code 형태를 불문하고 1971년에 개정된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과 같이 보호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여권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유럽등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대폭적인 보완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어 TRIPs협정의 국내적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의 세계화로 국내의 프

로그램 개발의욕이 고취되고 해외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기업과의 기술도입 촉진 및 신의의 경쟁 가속화로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프로그램보호제도 발전방향

지금까지 20세기의 경제발전은 도로, 항만등 물류 유통망이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해 왔으나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산업의 대외경쟁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정보통신망 구축과 그 활용정도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제공될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수성과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특수성은 종래의 법제계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쉽지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은 이용자가 디지털화 된 대량의 복합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초고속망을 통해 입수하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초고속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2중, 3중으로 직접 전송하거나 전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배포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저작물의 창작, 소유,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리이센스, 정보애의 액세스 및 사용권한 문제등 각 분야에 걸쳐 다수 이해당사자간의 권리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WTO/TRIPs 협정 주요내용

협정의 목적	협정의 주요내용	국내산업에의 영향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보호기준과 절차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혜국 대우와 내국인 대우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컴퓨터프로그램, 네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설계, 영업비밀등 새로운 분야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킴 - 컴퓨터프로그램, 영화저작자에게 대여 허락, 금지권 부여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 - 특히는 20년,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자사후 50년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지적재산물의 국내수입 증대와 각종 로얄티 부담의 증가로 관련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우려 - 기술도입 촉진,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로 국제경쟁력 세고에 도움

자료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UR타결에 따른 정보산업에의 영향과 대응」, 1994. 1

분야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지적재산권 법체계에도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문화청을 중심으로 1993년 11월 저작권 심의회 멀티미디어 소위원회 제1차 보고서가 공표된

바 있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소재로 이용되는 기존의 저작물에 관계되는 권리처리를 중심으로 심의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앞으로의 검토과제로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 제도상의 문제점, 즉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저작물성, 권리의 귀속, 권리의 내용과 제한, 정보의 디지털데이터화

일본의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제도 방향

항 목	현 상	문 제 점	향후방향(안)
복제권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컴퓨터 내부기억장치에 대한 축적은 순간적·과도적인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컴퓨터에 대한 순간적·과도적인 축적과 그 이외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복제개념을 순간적·과도적인 축적을 포함시켜 넓게 해석하는 경향임	복제의 정의에 전자적인 일시 축적을 포함시켜 명확하게 규정함
디스플레이 (제시)에 관한 권리	저작물을 스크린상 등에 제시하는 것에 관하여, 저작자에 대하여 「그 영화 및 그 복제를 공중에게 상영」하는 권리 인정	하이비전등 고정밀 표시 기술의 진보에 따라 영화저작물 외에 대해서도 스크린등에서 공중에게 제시하는 권리의 인정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기술적 장치에 의한 공중에의 화상의 시각적 제시(녹화물의 재생 및 통신된 저작물의 화면표시를 포함)에 관한 디스플레이권 등을 부여함
저작자 인격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그 의사에 반한 변경을 불가함	저작물의 변경등 양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의 특성 및 저작권법과 베른조약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동일성 유지권이 미치는 범위를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한 변경」에서 「저작권자의 명예 또는 평가를 해칠 염려가 있는 변경」으로 개정함
복제제한을 해제하는 장치 규제	기본적인 규정 없음	복사 등을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제하는 장치 등을 규제하는 법·제도가 없음	해제장치 등의 제조·판매를 민사구제 및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함
정보를 디지털화 한 자의 권리	정보의 선택등으로 창작성을 갖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로 보며, 정보를 단순히 디지털화하거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것은 보호하지 않음	정보의 디지털화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행위이며 그때 많은 노력과 함께 노우하우를 필요로 하는것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등에 대하여 저작 인접권을 부여함

자료 : 일경 데이터프로 커뮤니케이션 속보판, 1995. 3

주 : 본자료는 일본 멀티미디어심의소위원회의 1차 보고서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와 유선방송사업자의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1995년 9월 컴퓨터통신상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된 '정보인프라 프로젝트팀'은 "저작재산권과 국가정보 인프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이기는 하나 현재의 기술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정보전송을 '복사'로 규정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분명하게 치리할 것을 제안하고 도서관과 문서보관소 등은 보관을 목적으로 한 제한된 수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밖에 컴퓨터상의 저작권보호에 이용되는 전자태그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장치개발 금지촉구 및 5년 단위 이상의 복사본을 배포하는 저작권침해를 불법화하는 법률안을 제시 등을 밝혔다.

각국의 논점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까지 파고들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 제작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간단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다수 제작되어 유통되는 환경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담이 너무 크면 소프트웨어 제작의 욕이 감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어떠한 성과도 기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미국등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학계, 범조계, 정보통신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다 할 수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보호회를 중심으로 이에대한 기획연구가 수행하고 있음을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VIII. 맺음말

지금까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제도 현황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오늘날에 있어서 한나라의 상래는 그 나라의 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이 얼마나 앞서 있는가 혹은 앞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는 정보화시대라고 한다. 정보화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다름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이며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은 정보화 산업사회를 앞당기게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기초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개인적인 저작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이제 이러한 제도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송상현, 김문환, 양창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축조연구」, 서울대출판부, 1989.
- 신각칠, 「컴퓨터와 법률문제」, 법영사, 1992.
- 정상조, 「멀티미디어 관련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판문화 '96.6월호(355호)
- 김진희, 「조고속정보통신망과 저작권」, 계간 저작권 '95.6월호(29호)
-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95. 겨울호(창간호)
- 「한국 정보산업 민간백서('96년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7.
- 「한국 저작권 논문선집 II」,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임 정재

- 1990년 1월 : 정보통신부 전파관리국 전파심의관
- 1991년 7월 : 전파연구소 소장
- 1993년 6월 : 정보통신부 통신협력단 단장
- 1994년 7월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기술심의관
- 1995년 11월 :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이사장(현재)